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주)**건설	② 성 명 (대 표 자)	홍길동
③ 사업자(주민) 등록 번호	201-81-99999	④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02) 999-9999 (010-999-9999)
⑤ 사 업 장 (주 소)	(☎111-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8000@gmail.com		

###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 뒷 면 기 재

위와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합니다.

2012년 2월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대 리 인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무사,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 제89조의제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⑥ 상 호 (법 인 명)	***세우법인	⑦ 성 명 (대 표 자)	대표 인세우 세우사 (서명 또는 인)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101-99-99999	③ 담 당 자 (연 락 처)	담당 김세우 세우사 (010-777-9000)
		⑩ 사 업 장	(☎333-1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9000@gmail.com		

첨부서류 :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1. 신청내용이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 조치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신청한 경우 공동신청인은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3-2호 서식)」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㉓ 사실관계

○ 역지할 같은

㉔ 신청내용

'97.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를 상기한 같이 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08년 중에 대위변제하고 '08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 적의 1) 대위변제액을 업무유관 가지금급으로 보아 대손금 손급계상액이 불상입되는지 여부
- 적의 2) 만약, 상기 사실관계와 특정 현지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업무유관 가지금급 해당시 소득처분 방법과 소액시효 완성시 손급상입 가능 여부

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구 법인세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53조 및 제61~62조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㉖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 재법인-118(2007. 2. 22), 재법인-106(2004. 2. 13.), 법인46012-1282(2000. 5. 31), 서면2원-115(2006. 6. 15)원
- 국선 2005서436(2006. 3. 10.)

㉗ 신청인의 의견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인의변제로 보아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과 그 반대의 해석이 있어 사례별로 명확한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실 관 계

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97.12.31이전)한 후 해외지역의 외환위기와 환율급등에 따른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현지법인의 채무상환 능력상실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당해 피보증회사의 기업개선 작업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해외사업 중단 요구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 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08.6월 대위변제하였음

### ○ 현지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현황

구 분	현지법인 A	현지법인 B
대출(보증)일	'96.07.25.	'97.03.15.
대출은행	수출입은행외	장기신용은행외
대출금액(백만\$)	50	30
연대보증	당사	당사 및 계열사

### ○ 대위변제 및 대손처리 현황

구 분	현지법인 A	현지법인 B
변제일자	'08.6.30	'08.7.31
대위변제액	<b>00000</b>	<b>00000</b>
대손처리예정일	'08.12.31	'08.12.31
대손처리액	<b>00000</b>	<b>00000</b>

### ○ 지급보증 원인

-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은 지급보증 당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신용도가 Local side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관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요구로 모기업인 당사가 지급보증

### ○ 대위변제 사유

- '00년 xx國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인접국의 폐소화·루피아화의 평가절하는 진출국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연결되어 현지법인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97년말 진행중이던 공사가 전면 중단상태가 되었고,
- 그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불안한 현지국의 정치·경제 상황하에서 자산매각이 어렵게 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계속 증가하는 현지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지급능력도 상실하여
-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해외현지법인 보증채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게 됨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주)△△건설	② 성 명 (대표자)	홍 길 동	③ 사업자(주민) 등록 번호	102-8*-*****
④ 사업장 (주 소)	☎110-70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⑤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02)700-8000 010-700-8000	

다음 검토항목은 신청인 및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항목으로 **체크란의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 및 신청내용 검토

항 목	체크란(✓)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사업 또는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청대상 거래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일)이 경과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의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및 적용과 관련 있는 질의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또는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일련의 조합된 거래의 일부만 신청한 것이 아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1 년 12 월 15일

신청인 : (주)△△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주)**건설	② 성 명 (대 표 자)	홍길동
	③ 사업자(주민) 등록 번호	201-81-99999	④ 전 화 번 호 (휴 대 번 호)	(02) 999-9999 (010-999-9999)
	⑤ 사 업 장 (주 소)	(☎111-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8000@gmail.com		

### 신청내용

⑥ 답변통지를 받은 날	2012년 1월 31일	⑦ 문 서 번 호 (문서발송담당)	업규라 - 1**** (이 세 상)
⑧ 공개연기 신청 사유	#01(양해각서) 채적상태로 영업상 이익을 유지할 필요		
⑨ 공개연기 신청 기간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12 )개월		

위와 같은 사유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연기를 신청합니다.

2012년 2월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아래 사람에게 위 공개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장	대 리 인			
	위 임 자 (신 청 인)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무사,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 제89조의제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⑥ 상 호 (법 인 명)	***세무법인	⑦ 성 명 (대 표 자)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101-99-99999	③ 담 당 자 (연 락 처)	담당 김세우 세우사 (010-777-9000)
	⑩ 사 업 장	(☎333-1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9000@gmail.com		

※ 공개 연기신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주)**건설	② 성 명 (대 표 자)	홍길동
	③ 사업자(주민) 등록 번호	201-81-99999	④ 전 화 번 호 (휴 대 번 호)	(02)999-9999 (010-999-9999)
	⑤ 사 업 장 (주 소)	(☎111-11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8000@gmail.com		
대리인	⑥ 상 호 (법 인 명)	***세우법인	⑦ 성 명 (대 표 자)	대표 인세우 세우사
	⑧ 사 업 자 등록 번호	101-99-99999	⑨ 담 당 자 (연 락 처)	담당 김세우 세우사 (010-777-9000)
	⑩ 사 업 장	(☎333-11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 전자우편(E-mail) : sky9000@gmail.com		

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 역지로 작성**

위와 같은 사업상 긴급한 사정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2012년 2월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대표자) : \*\*\*세우법인 대표 인세우 세우사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 1부

1.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3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통제불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